

2012 년도 귀속
반석 급여 연말정산

(주) 반 석 시 스 템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 길 28
우림이비지센타 1 차 702 호

TEL 797-5751, FAX 797-4106

▣ 연 말 정 산 방 법

1. 연말정산시기

- ① 2013.2월 급여/상여금 - 간이세액표 의거 징수하여 다음달 11일 (3월 11일)까지 납부
- ② 201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 2013.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 ※ 2013.2월분 급여를 2013. 2. 28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3. 2. 28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세액은 2013. 3. 11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③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2013년 2월 분에 연말정산분까지 포함하여 2012년 3월 11일까지 제출하며,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 했을 경우 2013년 2월분 징수액 납부 시 차감 조정하여 나머지 금액만 납부 합니다.

2. 연말정산 방법 및 순서

- ① 월별 급여/상여 지급합계표와 연간 개인별 지급총합계표를 출력하여 회계장부와 대조할 것
 - ※ 2012년도 -> 각종양식 프린트 -> 연말정산 자료 -> **월별 급여/상여 지급합계표 (프린트)**
연간 개인별 지급총합계표 (프린트)
- ② 2012 년도에서 -> 연말정산 -> 12월말 **연말정산 작업시작**
- ③ 2013 년도에서 -> 2013. 2월분 급여를 간이세액으로 계산
- ④ 2013년 2월분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 분 합산조정 하는 방법
 - ※ 2012년도 연말정산에서 [연말정산세액 공제일자 입력]을 통하여 2013년 급여/상여에 차감조정 할 수 있습니다. (적용일자 지정)

3. 2012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참조

★ 연말정산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으니 급여프로그램을 UP-GRADE 받으신 후에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2011년 귀속	2012년 귀속
실비변상적인 급여 비과세소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활동비 비과세(월 20만원 이내) - 적용대상: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활동비 비과세(월 20만원 이내) - 좌동 -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자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금품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국외근로자 비과세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 해외건설근로자, 원양·외항선원 : 월 1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해외건설근로자 : 월 300만원 - 원양·외항선원 : 월 200만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 (급여)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자 - (업종)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 (급여) 직전연도 총급여 2,000만원 이하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자 - 좌동
월세액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 (단독세대주 가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거주자간 차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근로자 * 이자율 - 연간 1,000분의 37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 (단독세대주 가능) * 이자율 - 연간 1,000분의 40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연 1,000만원 - 상환기간 30년 이상: 연 1,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한도 -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상환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 차등 - 상환기간 15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5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 연 500만원: 기타 대출

구 분	2011년 귀속	2012년 귀속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 : 1년 - 지정기부금 : 5년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 : 3년 - 지정기부금 : 5년
기부금 이월공제 대상금액 명확화	* 근로자의 경우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	*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전액을 이월할 수 있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설>	* 감면대상 - 12년~13년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 감면금액 :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100% - 적용기한 : 2013.12.31 (2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율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20% - 직불(체크)·선불카드 : 25% - <신설> *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공제금액 계산방식 - 카드별 사용금액을 안분하여 최저사용금액을 채움 * 적용기한 : 2011.12.31 까지	* 공제율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20% - 직불(체크)·선불카드 : 30% - 전통시장 사용분 : 30% *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전통시장 사용분 : 추가 100만원 * 공제금액 계산방식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순으로 최저사용금액을 채움 * 적용기한 : 2014.12.31 까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적용방식 변경	* 공제한도 : 월 납입액 10만원 -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 중 당해연도 불입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공제	* 공제한도 : 연 납입액 120만원 -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선입금·지연입금 불문)

4. 연말정산 사전작업

4. 연말정산 ▶ 6.소득자소득공제신청서를 프린트하여 공제내역이 있는 사원에게 배포 후 회수한 내용으로 입력하시면 편리하게 연말정산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및 출력, 저장

5-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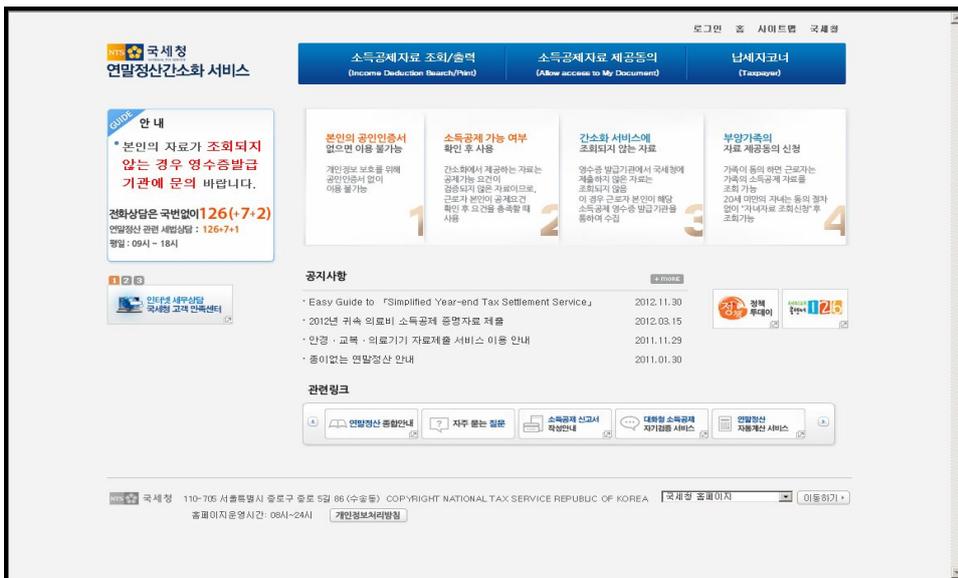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자료(소득공제 영수증)를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로, 근로소득자는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내역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5-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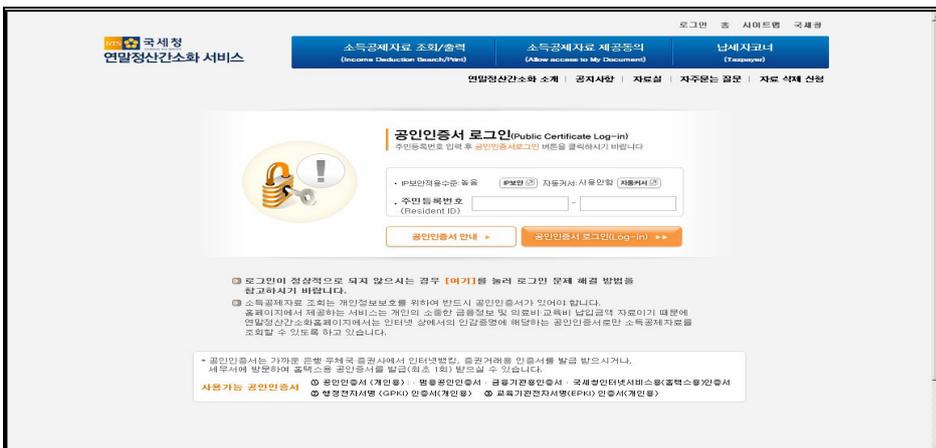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주택자금(무주택 세대주), 주택마련저축(무주택세대주), 연금, 기부금, 기타 공제항목에 대한 정보를 출력할 수 있으며, 간소화 사이트에서 집계되지 않은 금액의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5-3. 근로자가 소득공제자료 조회 후 프린트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접속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2) 소득공제 증명서류 전자파일 다운로드

-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을 클릭한다.
- 항목을 클릭하면 항목별 금액 및 지출처별 지출금액이 조회되며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 메뉴를 이용하여 소득공제증명자료 조회 후, 조회한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 버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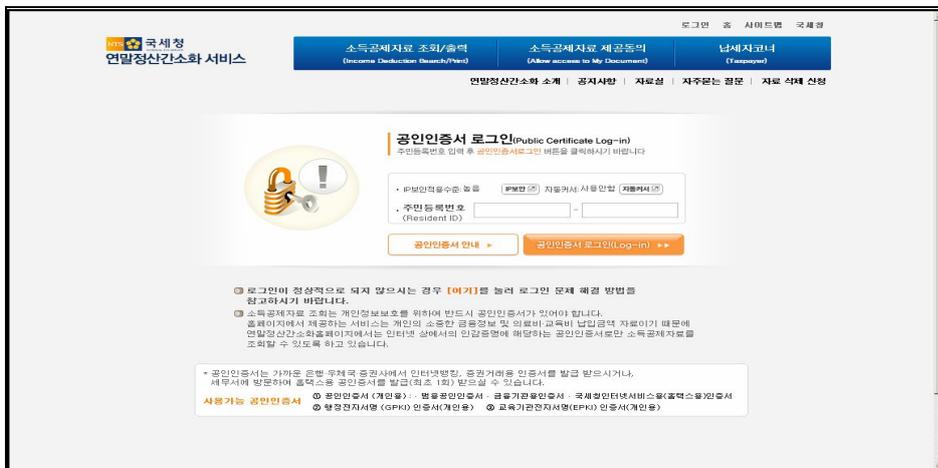


- [조회한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화면에서 한 번에 출력할 항목들이 모두 체크되었는지 확인 후 [인쇄] 버튼 클릭
- ※ 소득공제조회 항목을 클릭하면 월별(일자 별) 지출(사용)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4. 근로자가 소득공제자료 조회 후 전자파일(PDF 파일) 생성

(필독1) 단. PDF 제공하여 연말정산 희망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기존 종이만 출력하여 연말정산 진행 시 PDF 파일 다운로드 과정은 생략하시면 됩니다.

(1) 인터넷 www.yesone.go.kr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직접 입력 -> 공인인증서 로그인



(2) 소득공제자료 조회.다운로드

-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을 클릭한다.
- 항목을 클릭하면 항목별 금액 및 지출처별 지출금액이 조회되며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 메뉴를 이용하여 소득공제증명자료 조회 후, “조회한 항목 한번에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버튼 클릭



- [조회한 항목 한번에 다운로드하기]화면에서 한 번에 출력할 항목들이 모두 체크되었는지 확인 후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여 전자문서를 다운로드 한다.
- ※ 소득공제조회 항목을 클릭하면 월별(일자 별) 지출(사용)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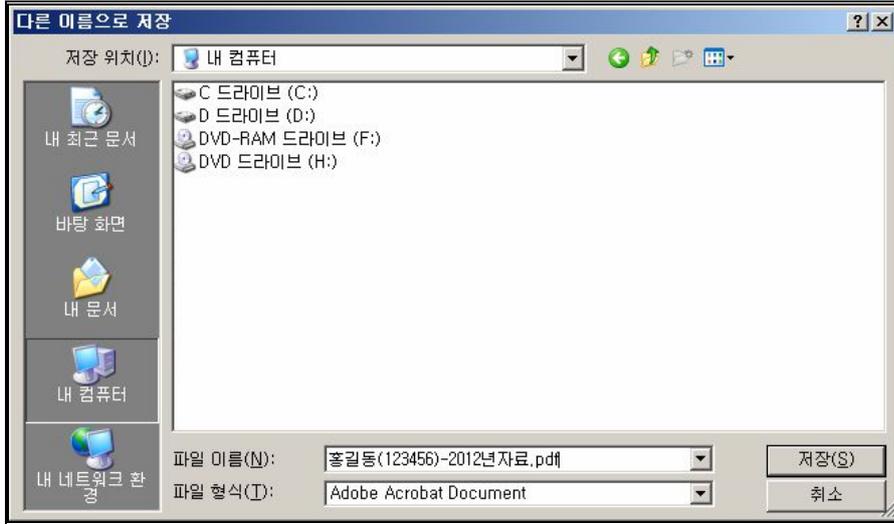


- ※ 전자문서 다운로드 시 문서의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로 자동 설정) 설정이 가능합니다.
- ※ 파일명은 기본적으로 “성명(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항목명. PDF”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 다음과 같은 안내 메시지가 나오면 “저장” 버튼 클릭



- “저장 위치” 지정 후 “저장” 버튼을 클릭



(3) 다운로드 한 전자문서 활용하기

- 근로자는 다운로드 한 전자문서를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한다.
 - “종이 없는 연말정산” 환경을 제공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다운로드 한 전자문서를 소득공제증명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소득공제자료 활용 방법

(1) 근로자는 출력한 자료를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금액이 정확하다면, 이를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에게 제출한다.
 중도 입사(퇴사)자는 월별 지출금액(의료비는 일자별 지출금액)을 출력하여 이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2) 서비스 제공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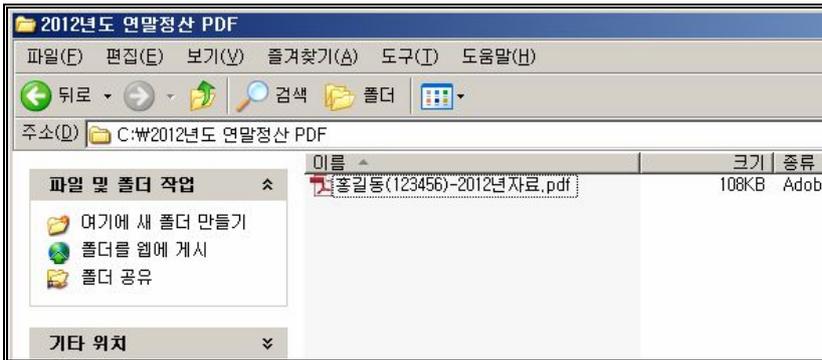
‘12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작년과 같이 2013년 1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며, 금번’ 12년 귀속 연말정산 때는’ 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사용)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상담문의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상담센터(☎126 ⇨ 내선 7)

7. PDF(전자문서)파일을 적용하여 연말정산

* PDF(전자문서) 파일 적용하여 연말정산 진행 (PDF 파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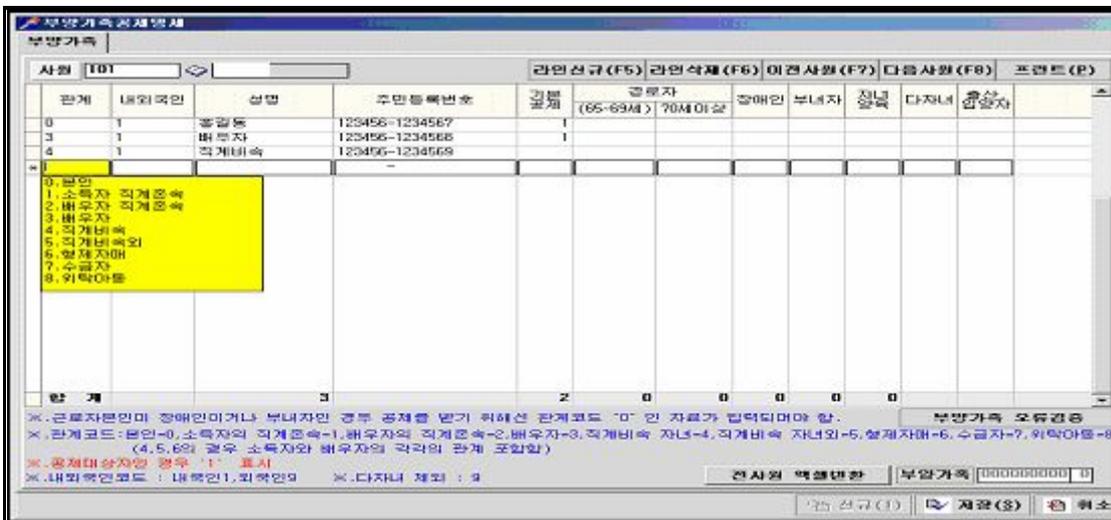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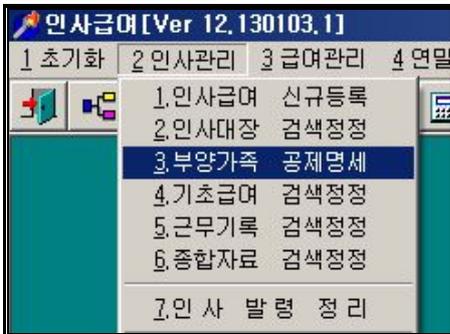
* PDF(전자파일)가 없거나 이전처럼 종이자료(소득자 소득공제신청서) 기준으로 연말정산 진행 시
 ” 8. 연말정산 작업안내 “ 메뉴 18page 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7-1. 내 컴퓨터 -> C:\W 이동 -> C:\W2012년도 연말정산 PDF 폴더 생성 후 -> PDF 파일을 복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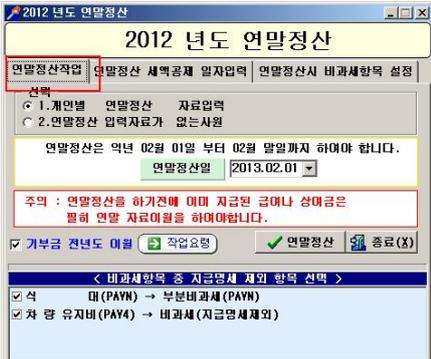


7-2. PDF 파일 적용 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을 미리 등록해 놓으실 경우 편리하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 부양가족 공제내용이 있을 경우 이름과 주민번호를 check 하여 공제내용이 자동 반영됩니다.)

반석급여 로그인 >>> 2. 인사관리 >>> 3. 부양가족 공제명세



7-3. **반석급여 로그인** ▶▶ **4. 연말정산** ▶▶ **1. 12월말 연말정산작업**



1. 개인별 연말정산 자료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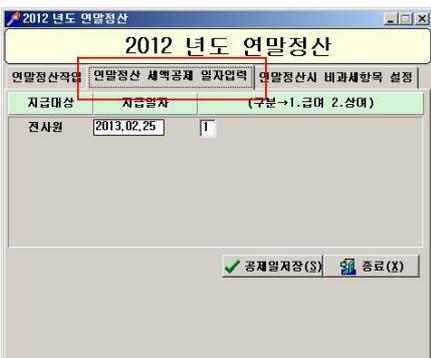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으로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나 특별공제가 있는 경우 선택지행

2. 연말정산입력자료가 없는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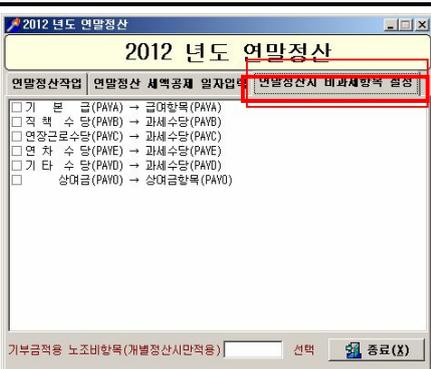
기본공제 외 다른 사항이 없는 경우 일괄계산이 됩니다.

(추가메뉴) 기부금 전년도 이월 (V 체크) 확인

(기존사원) 2011년도 기부금 이월금액이 있을 경우 이월 반영됩니다.



* 연말정산 급여 반영일자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월 급여 일자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해당하는 일자의 공제항목에 연말정산란이 보여지며 소득세, 주민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집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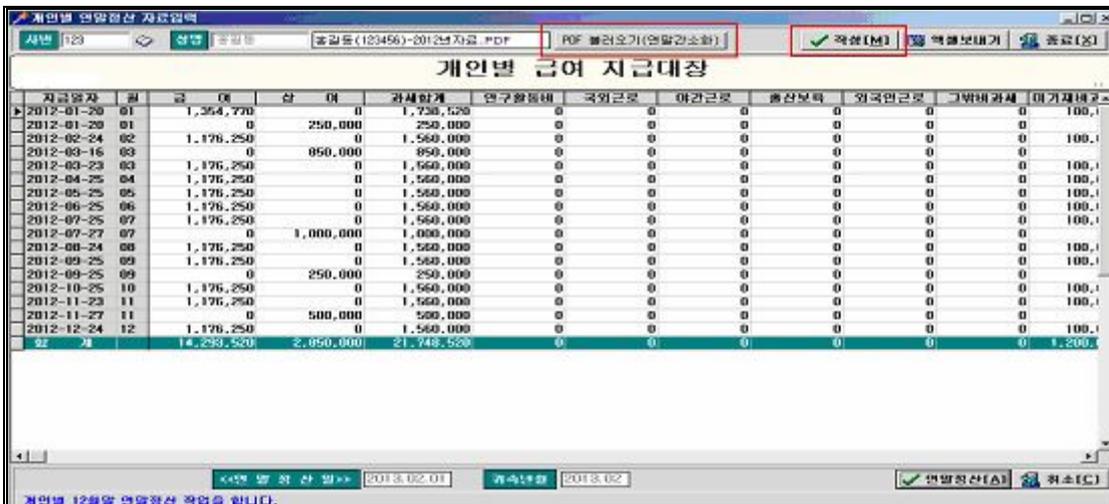


* 당해 년도 지급된 급여 중 비과세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선택하는 화면으로 항목 앞부분에 체크한 후 종료를 선택하면 비과세 항목으로 변경이 됩니다.

(기존의 과세 처리했던 지급항목을 연말정산 진행할 때 비과세로 적용하고자 할 경우 적용합니다. 기존 계산된 세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7-4. 개인별 급여 지급대장 PDF 파일 불러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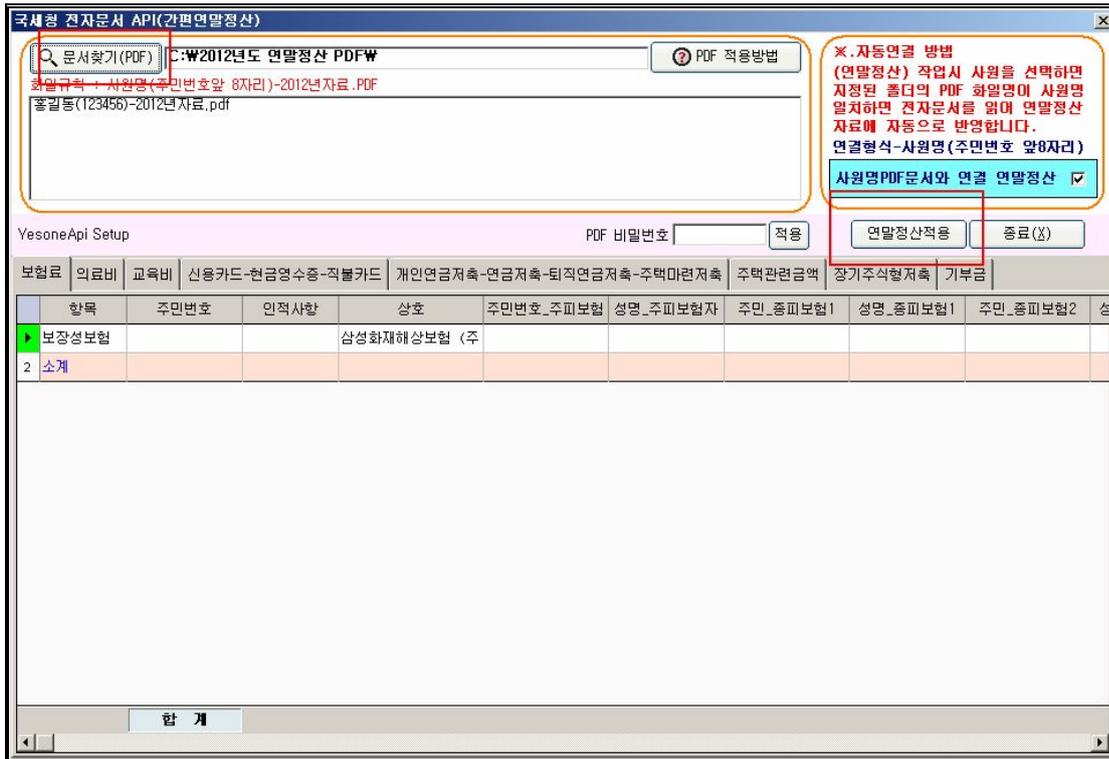
(1) 사번 입력 및 선택 -> **작성** 클릭 -> **PDF 불러오기(연말간소화)** 클릭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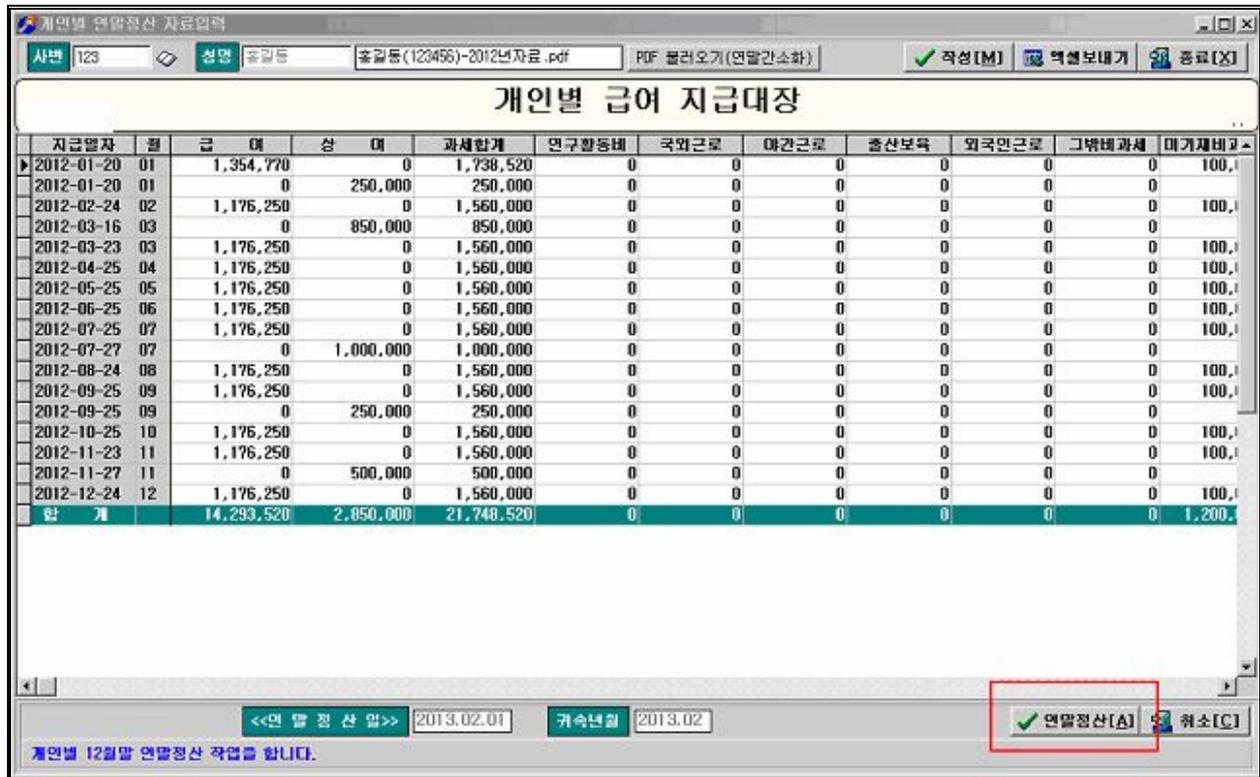
지급일자	월	급	대	산	대	과세항목	연구활동비	국외근로	야간근로	출산보통	영국외근로	그밖비과세	대기과세
2012-01-20	01	1,354,770	0	250,000	0	1,730,520	0	0	0	0	0	0	100.0
2012-02-24	02	1,176,250	0	0	0	1,560,000	0	0	0	0	0	0	100.0
2012-03-16	03	0	850,000	0	0	850,000	0	0	0	0	0	0	100.0
2012-03-23	03	1,176,250	0	0	0	1,560,000	0	0	0	0	0	0	100.0
2012-04-25	04	1,176,250	0	0	0	1,560,000	0	0	0	0	0	0	100.0
2012-05-25	05	1,176,250	0	0	0	1,560,000	0	0	0	0	0	0	100.0
2012-06-25	06	1,176,250	0	0	0	1,560,000	0	0	0	0	0	0	100.0
2012-07-25	07	1,176,250	0	0	0	1,560,000	0	0	0	0	0	0	100.0
2012-07-27	07	0	1,000,000	0	0	1,000,000	0	0	0	0	0	0	100.0
2012-08-24	08	1,176,250	0	0	0	1,560,000	0	0	0	0	0	0	100.0
2012-09-25	09	1,176,250	0	0	0	1,560,000	0	0	0	0	0	0	100.0
2012-09-25	09	0	250,000	0	0	250,000	0	0	0	0	0	0	100.0
2012-10-25	10	1,176,250	0	0	0	1,560,000	0	0	0	0	0	0	100.0
2012-11-23	11	1,176,250	0	0	0	1,560,000	0	0	0	0	0	0	100.0
2012-11-27	11	0	500,000	0	0	500,000	0	0	0	0	0	0	100.0
2012-12-24	12	1,176,250	0	0	0	1,560,000	0	0	0	0	0	0	100.0
합 계		14,293,520	2,950,000	21,748,520	0	0	0	0	0	0	0	0	1,200.0

(2) 왼쪽 상단 **문서 찾기(PDF)** 클릭 → C:W2012년도 연말정산 PDF 폴더를 지정 확인

연말정산 하고자 하는 직원의 PDF 을 선택 후 → 오른쪽 상단 **연말정산적용** 클릭시 보여지는 화면 입니다



(3) 연말정산을 하기 위한 화면으로 오른쪽 하단 **연말정산** 클릭 합니다.



(4) 근무처별 명세 자료

◆ 연말정산 시 첫 번째 화면으로 준비된 [개인별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종(전)근무지 해당하는 경우 근무기간, 소득금액, 비과세 내용, 납부세액 등을 입력하고 “다음화면” 클릭 합니다.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 종(전)근무지 별 상세내역까지 표기 해야 합니다.

◆ 세대주구분 선택 (세대주, 세대원 중 한 개를 선택합니다.)

세대주가 아닐 경우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고, 통과시 세대원으로 인식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2.인사관리-> 2.인사대장검색정정

오른쪽하단 취업청년(Y) 부분과 감면기간을 입력하면 감면기간 만큼 세액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면기간에 따른 소득이 비과세란 및 감면 소득란에 보이며, 감면 받은 세액만큼 감면세액란에 집계됩니다.)

◆ 외국인 경우에는 **외국인세액 15% 단일세율 적용**에 “1”을 선택하여 연말정산 하거나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중 선택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5) 인적 공제 자료입력 (기본공제 및 부양가족 등)

◆ 연말정산 두 번째 화면으로 부양가족 별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기부금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PDF 파일로 불러온 경우는 금액확인 후 작업합니다.)

◆ **PDF 파일 자동 적용** 등록되어있는 경우 주민번호와 성명이 일치하는 경우 PDF 파일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주의) PDF 파일에 보여지는 자료가 모두 공제 요건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니오니 소득자들이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를 토대로 확인 후 연말정산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금액이 보이지 않으니 등록여부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 **PDF 파일** 을 적용한 후 재 적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에 **연말정산간소화 PDF** 를 클릭하시면 **PDF 파일** 자료로 재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을 추가하여 소득공제 명세를 입력하고자 할 경우 오른쪽상단 라인신규(F5)을 통해 신규라인이 생성이 되면 부양가족 별로 지출된 금액을 입력, 정정 하실 수 있습니다.

(6) 연말정산 자료입력

◆ 연말정산 세 번째 화면으로 인적 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등 상세히 추가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1. 의료비 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시 의료비의 상세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의료비 공제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상세내역을 입력합니다.

◆ 2012 귀속 년도 국세청에서 집계된 내역을 의료공제 대상자별 전체 의료비 내역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집계된 자료는 증빙코드 [1번] 으로 입력)

(증빙코드가 "1" 번인 자료는 건수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2.기부금명세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총액		14,500,000		EXCEL		PRINT		기부금 명세서				신규(F5)		삭제(F6)		작업완료(X)		
기부금명	기부금유형	기부연도	기부처				거주자				기부금액	전년까지 공제원금액	공제대상 금액	해당년도공제액	해당년도공제받지못한금액	소멸금액	미결제금액	
			상호(법인명)	※ 사업자번호 등	※ 내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10	법정기부금	2011	유니세프	0	123-45-61234	1	1	홍길동	123456-1234567	1	2,000,000	100,000	1,900,000	1,900,000	0	0	0	0
10	법정기부금	2012	유니세프	0	123-45-12345	1	1	홍길동	123456-1234567	1	500,000		500,000	500,000	0	0	0	0
* 10 : 법정기부금 20 : 정치자금 30 : 특별기부금 31 : 공익법인기부금 40 : 종교단체외지 41 : 종교단체기부금 42 : 우리사주조합 우려사주조합																		
합 계		2									2,500,000	100,000	2,400,000	2,400,000	0	0	0	0
※.기부금코드 : 10 : 법정기부금 40 :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관계 : 1.본인, 2.배우자, 3.직계비속, 4.직계존속, 5.형제자매, 6.그 외 20 : 정치자금 41 : 종교단체기부금 ※.내외 : 1.내국인, 9.외국인 30 : 특별기부금 42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거주자구분 : 0.법인:사업자등록번호,1.개인:주민등록번호 31 : 공익법인기부금 ※.기부금코드 : 20,42 은 본인외 공제가 안됩니다.																		

- ◆ **기부금명세입력**을 선택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으로 기부금 코드 별 내역에 따라 입력하셔야 합니다.
- ◆ 기부금 명세합계 화면으로 첫 화면에서 입력한 부양가족 별 기부금에 대한 상세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기부금 금액을 입력하는 화면 입니다. (**※ 기부금코드 20, 42 본인만 공제 가능**)

◆ **기부금 대상 (부양가족 확대) - 2011년부터 적용**

공제대상 기부금 / 거주자(본인),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 만원 이하인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이 지급한 기부금.

★★3. 연금, 저축 등 소득공제명세서★★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명세서										
공제구분		공제소득명	금융기관코드	금융기관상호	계좌번호	납입연차	납입금액	공제금액		
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90	농협중앙회	12-1234-1354351		2,000,000	2,000,000		
12	과한기술인공제회		171	노무라금융투자	21-1234-453211		500,000	500,000		
21	개인연금저축		302	한국씨티은행	00404-1-23123-23		2,000,000	720,000		
22	연금저축		307	중소기업은행	2221-1351321-11		5,000,000	1,500,000		
31	형약저축		301	한국산업은행	1213-4354321-352121		500,000	200,000		
* 1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과한기술인공제회 21.개인연금저축 22.연금저축 31.형약저축 32.주택청약종합저축 33.장기주택마련저축 34.근로자주택마련저축 41.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10,000,000	4,920,000		
[ESC : 작업취소] [입력시 ENTER KEY 입력요]										
퇴직연금소득 불입액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항목	불입금액	항목	불입금액	항목	불입금액	항목	불입금액	항목	불입금액	
11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0	21 : 개인연금저축	0	31 : 형약저축	0	41 : 1.납입1년	0		0	
12 : 과한기술인공제회	0	22 : 연금저축	0	32 : 주택청약종합저축	0	41 : 2.납입2년	0		0	
				33 : 장기주택마련저축	0	41 : 3.납입3년	0		0	
				34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0					

- ◆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를 입력합니다.
(적용방법 1) **연금, 저축 등 소득공제명세서 작성 후 작업완료** 클릭 시 세 번째 화면에 자동적용
(적용방법 2) 세 번째 화면에 개별입력 후 **연금, 저축 등 소득공제명세서를 금액 및 목록을 확인하면서 입력**합니다. **작업완료**를 클릭 시 일치 여부 확인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 연금, 저축 등 소득공제명세서 입력 중 완료하지 않고 종료한 경우 세 번째 화면에 해당란의 금액들은 초기화 되어 "0" 이 됩니다.(입력 후 작업완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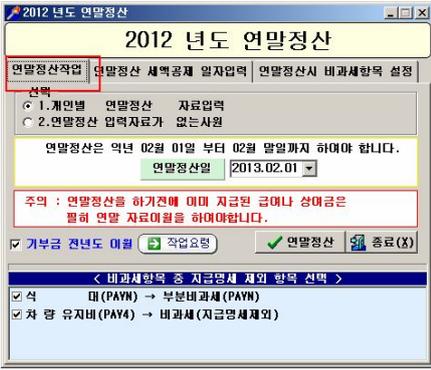
(7) 연말정산완료 내역

개인별 연말정산 자료입력									
구분	주(현)근무지	중(전)근무지(1)	중(전)근무지(2)	중(전)근무지(3)	합계	출금여	32,748,520	사번	123
금여	19,293,520	1,000,000	1,500,000	2,000,000	23,793,520	근로소득공제	11,524,852	성명	홍길동
상여	7,455,000	500,000	500,000	500,000	8,955,000	근로소득금액	21,223,668	정산일	2013.02.01
인정상여					0	미기재 비과세	3,200,000	귀속년월	2013.02
주식매수선택권					0	비과세 소득합계	0	작업선택	12월말 연말정산
우리사주조합					0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920,000	종합검색	사용자수정 여부(U:수정)
합계	26,748,520	1,500,000	2,000,000	2,500,000	32,748,520	연금 저축 소득공제	158,747	비과세/감면 명세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0	구분	합계
기부	본인 1,500,000	장애인 0	0	0	0	청약저축	0	▶ 국외근로 100만원	0
추가	배우자 1,500,000	부녀자 0	0	0	0	주택청약종합저축	0	국외근로 200(300)	0
	부양가족 1,500,000	자녀양육 0	0	0	0	주거임대차공제	0	국외근로	0
	경로우대 0	출산, 입양자 0	0	0	0	근로자주택마련저축	0	아간근로수당	0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0	0	0	0	0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0	출산, 보육수당	0
국민연금	975,960	군인연금	500,000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0	연구보조비(기업)	0
공무원연금	100,000	사립학교직원	200,000			우리사주조합출 소득공제	0	연구보조비(연구)	0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	500,000			장기주택저축 소득공제	0	연구보조비(특별)	0
퇴직연금공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0,000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0	연구보조비(고등)	0
건강보험료	822,020	장기저축	15년이상 0			종합소득과세표준	0	연구보조비(유아)	0
고용보험료	231,366	15-29년	0			산 출 세 액	0	연구보조비(연구)	0
보장성보험	1,000,000	30년이상	1,000,000			세액감면	0	비과세화자금	0
장애편입금	0	고령-비거처	0			소득세법	0	보육교사 근무환급	0
의료비	2,021,055	기타대출	0			조세특례제한법	0	사람유치원 교사	0
교육비	1,094,520	기부금	2,400,000			조세특례(30조)	0	취재수당	0
대출기관	0	계	10,568,961			조세조약	0	백지수당	0
거주자	0	표준공제	0			세액감면계	0	재해관련금여	0
월세액	2,000,000	차감소득금액	878,747			세액공제계	0	부모수위원수당	0
구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세액공제	0	외국주요인등	0
결정세액	0	0	0	0		납세조합공제	0	주식매수선택권	0
중(전)근무지	100,000	10,000		110,000		주택차입금	0	외국인기술자	0
중(전)근무지	150,000	15,000		165,000		기부정치자금	0		0
중(전)근무지	200,000	20,000		220,000		외국납부	0		0
중(전)근무지	135,060	13,480		148,540		세액공제계	0		0
차감징수세액	-585,060	-58,480		-643,540					0

◆ 개인에 대한 연말정산 입력을 완료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화면으로 입력자료를 확인 후 맞을 경우 반드시 “저장 [S]” 을 클릭한 후 “검색완료[X]” 을 선택합니다.

8. 연말정산 작업안내

8-1. 반석급여 로그인 ▶▶ 4. 연말정산 ▶▶ 1. 12월말 연말정산작업



1. 개인별 연말정산 자료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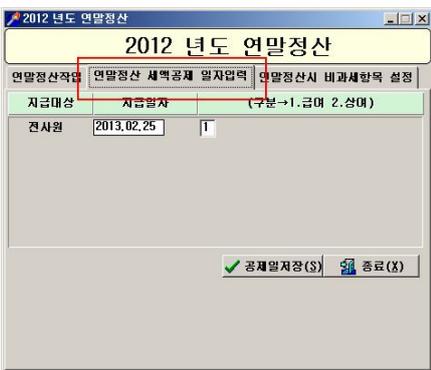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으로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나 특별공제가 있는 경우 선택진행

2. 연말정산입력자료가 없는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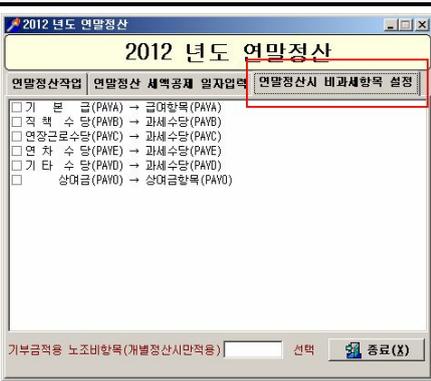
기본공제 외 다른 사항이 없는 경우 일괄계산이 됩니다.

(추가메뉴) 기부금 전년도 이월 (V 체크) 확인

(기존사원) 2011년도 기부금 이월금액이 있을 경우 이월 반영됩니다.



* 연말정산 급여 반영일자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월 급여 일자리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해당하는 일자의 공제항목에 연말정산란이 보여지며 소득세, 주민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집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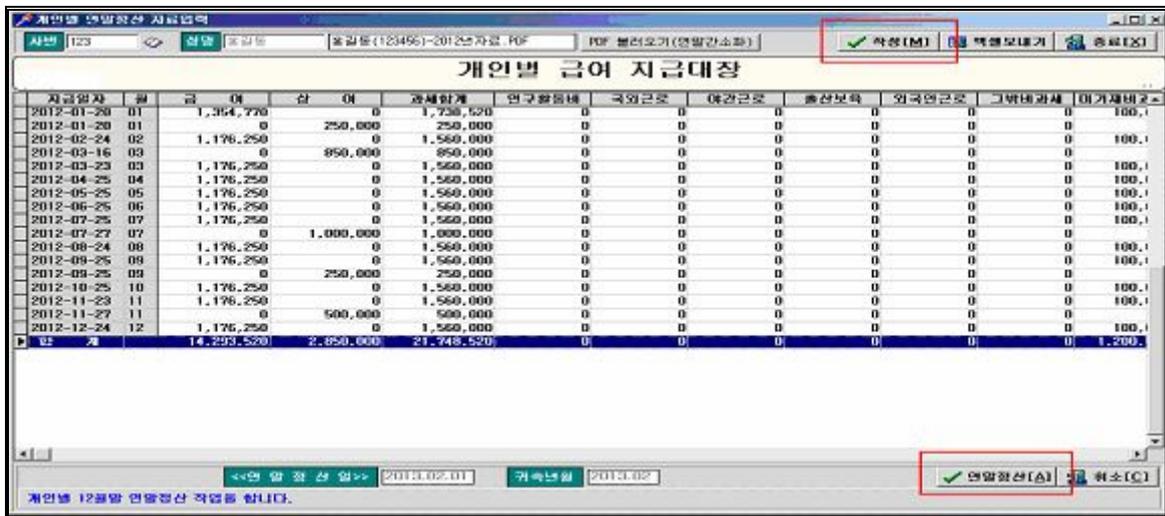


* 당해 년도 지급된 급여 중 비과세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선택하는 화면으로 항목 앞부분에 체크한 후 종료를 선택하면 비과세 항목으로 변경이 됩니다.

(기존의 과세 처리했던 지급항목을 연말정산 진행할 때 비과세로 적용하고자 할 경우 적용합니다. 기존 계산된 세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8-2. 개인별 급여 지급대장

(1) 사번 입력 및 선택 -> **작성** 클릭 -> 오른쪽 하단 **연말정산** 클릭 합니다.



지급일자	월	금	대	산	대	총액합계	연공제항목	국외근로	여건근로	출산보육	외국근로	그밖비과세	이기제비과세
2012-01-20	01	1,364,770	0	0	1,364,770	0	0	0	0	0	0	0	100.1
2012-01-20	01	0	250,000	0	250,000	0	0	0	0	0	0	0	100.1
2012-02-24	02	1,176,250	0	0	1,176,250	0	0	0	0	0	0	0	100.1
2012-03-16	03	0	850,000	0	850,000	0	0	0	0	0	0	0	100.1
2012-03-23	03	1,176,250	0	0	1,176,250	0	0	0	0	0	0	0	100.1
2012-04-25	04	1,176,250	0	0	1,176,250	0	0	0	0	0	0	0	100.1
2012-05-25	05	1,176,250	0	0	1,176,250	0	0	0	0	0	0	0	100.1
2012-06-25	06	1,176,250	0	0	1,176,250	0	0	0	0	0	0	0	100.1
2012-07-25	07	1,176,250	0	0	1,176,250	0	0	0	0	0	0	0	100.1
2012-07-27	07	0	1,000,000	0	1,000,000	0	0	0	0	0	0	0	100.1
2012-08-24	08	1,176,250	0	0	1,176,250	0	0	0	0	0	0	0	100.1
2012-09-25	09	1,176,250	0	0	1,176,250	0	0	0	0	0	0	0	100.1
2012-09-25	09	0	250,000	0	250,000	0	0	0	0	0	0	0	100.1
2012-10-25	10	1,176,250	0	0	1,176,250	0	0	0	0	0	0	0	100.1
2012-11-23	11	1,176,250	0	0	1,176,250	0	0	0	0	0	0	0	100.1
2012-11-27	11	0	500,000	0	500,000	0	0	0	0	0	0	0	100.1
2012-12-24	12	1,176,250	0	0	1,176,250	0	0	0	0	0	0	0	100.1
합 계		14,293,520	2,850,000	0	17,143,520	0	1,200.1						

(2) 근무처별 소득자료 입력

◆ 연말정산 시 첫 번째 화면으로 준비된 [개인별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중(전)근무지 해당하는 경우 근무기간, 소득금액, 비과세 내용, 납부세액 등을 입력하고 “다음화면” 클릭 합니다.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 중(전)근무지 별 상세내역까지 표기 해야 합니다.

◆ 세대주구분 선택 (세대주, 세대원 중 한 개를 선택합니다.)

세대주가 아닐 경우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고, 통과시 세대원으로 인식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2.인사관리-> 2.인사대장검색정정

오른쪽하단 취업청년(Y) 부분과 감면기간을 입력하면 감면기간 만큼 세액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면기간에 따른 소득이 비과세란 및 감면 소득란에 보여지며, 감면 받은 세액만큼 감면세액란에 집계됩니다.)

◆ 외국인 경우에는 **외국인세액 15% 단일세율 적용**에 “1”을 선택하여 연말정산 하거나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중 선택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1. 의료비 지급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의료비사종액		3,003,510		EXCEL PRINT		의료비 지급명세서		신규[F5]		D삭제[F6]		작업완료(X)	
증빙코드	증빙코드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대상구분	건수	지급내역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1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123-45-67890	123456-1234567	1	1	2,000,000							
1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123-45-67891	123456-1234568	1	1	1,000,000							
* 1.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2.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부담명세서 3.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4.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5.기타 의료비 영수증													
합 계									0		3,000,000		

※.대상구분 : 본인 등 해당여부
 ※ [증빙코드 : 1.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는 사업자번호,건수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말정산 시 의료비의 상세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의료비 공제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상세내역을** 입력합니다.
- 2012 귀속 년도 **국세청에서 집계된 내역을 의료공제 대상자 별 전체의료비 내역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집계된 자료는 증빙코드 [1번] 으로 입력)
(증빙코드가 "1" 번인 자료는 건수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기부금명세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총액		14,500,000		EXCEL PRINT		기부금 명세서		신규[F5]		D삭제[F6]		작업완료(X)					
기부금코드	기부금유형	기부년도	상호(법인명)	사업자번호 등	내외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수	기부금액	전년까지 공제입금액	공제대상 금액	해당년도 공제금액	해당년도 공제받지 못한금액	미할금액			
												소멸금액	이월금액				
10	법정기부금	2011	유니세프	0 123-45-61234	1 1	홍길동	123456-1234567	1	2,000,000		100,000	1,900,000	1,900,000	0			
10	법정기부금	2012	유니세프	0 123-45-12345	1 1	홍길동	123456-1234567	1	500,000		500,000	500,000	0				
* 10 : 법정기부금 20 : 정치자금 30 : 특례기부금 31 : 공익법인기부 40 : 종교단체외지 41 : 종교단체기부 42 : 우리사주조합																	
합 계									2			2,500,000	100,000	2,400,000	2,400,000	0	0

※.기부금코드 : 10 : 법정기부금 40 :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관계 : 1.본인, 2.배우자, 3.직계비속, 4.직계존속, 5.형제자매, 6.그 외
 20 : 정치자금 41 : 종교단체기부금 ※.내외 : 1.내국인, 9.외국인
 30 : 특례기부금 42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기부처구분 : 0.법인:사업자등록번호, 1.개인:주민등록번호
 31 : 공익법인기부신청 ※.기부금코드 : 20,42 은 본인외 공제가 안됩니다.
 [ESC : 작업취소] [입력시 ENTER KEY 입력요]

- 기부금명세입력**을 선택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으로 기부금 코드 별 내역에 따라 입력하셔야 합니다.
- 기부금 명세합계 화면으로 첫 화면에서 입력한 부양가족 별 기부금에 대한 상세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기부금 금액을 입력하는 화면 입니다. (**※ 기부금코드 20, 42 본인만 공제 가능**)
- 기부금 대상 (부양가족 확대)-2011년부터 적용**
공제대상 기부금 / 거주자(본인),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인 기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 자, 위탁아동 이 지급한 기부금.

★3. 연금, 저축 등 소득공제명세서★

공제구분	공제소득명	금융기관코드	금융기관상호	계좌번호	납입연차	불입금액	공제금액
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90	농협중앙회	12-1234-1354351		2,000,000	2,000,000
12	과학기술인공제회	171	노우라금융투자	21-1234-453211		500,000	500,000
21	개인연금저축	302	한국씨티은행	00404-1-23123-23		2,000,000	720,000
22	연금저축	307	중소기업은행	2221-1351321-11		5,000,000	1,500,000
31	청약저축	301	한국산업은행	1213-4354321-352121		500,000	200,000
						10,000,000	4,920,000

퇴직연금소득 불입액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항목	불입금액	항목	불입금액	항목	불입금액	항목	불입금액
11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0	21 : 개인연금저축	0	31 : 청약저축	0	41 : 1.납입1년	0
12 : 과학기술인공제회	0	22 : 연금저축	0	32 : 주택청약종합저축	0	41 : 2.납입2년	0
				33 : 장기주택마련저축	0	41 : 3.납입3년	0
				34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0		

- ◆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를 입력하도록 한다.
- (적용방법 1) 연금, 저축 등 소득공제명세서 작성 후 작업완료 클릭 시 세 번째 화면에 자동적용 됩니다.
- (적용방법 2) 세 번째 화면에 개별입력 후 연금, 저축 등등 소득공제명세서를 금액 및 목록을 확인하면서 입력합니다. 그리고 작업완료를 클릭 시 일치 여부 확인 후 저장됩니다.

※ 연금, 저축 등 소득공제명세서 입력 중 완료하지 않고 종료한 경우 세 번째 화면에 해당란의 금액들은 초기화 되어 "0" 이 됩니다.

(5) 연말정산완료 내역

구분	주(현)근무지	중(전)근무지(1)	중(전)근무지(2)	중(전)근무지(3)	합계	총금대	잔액
구분	19,293,520	1,000,000	1,500,000	2,000,000	23,793,520	32,748,520	11,524,852
상대	7,455,000	500,000	500,000	500,000	8,955,000	21,223,668	
인정상여					0		
주식매수선택					0		
우리사주조합					0		
합계	26,748,520	1,500,000	2,000,000	2,500,000	32,748,520	3,200,000	3,200,000

구분	주(현)근무지	중(전)근무지(1)	중(전)근무지(2)	중(전)근무지(3)	합계	총금대	잔액
국민연금	975,960	0	500,000	0	1,475,960	720,000	755,960
공무원연금	100,000	0	200,000	0	300,000	158,747	141,253
퇴직연금	0	0	500,000	0	500,000	0	500,000
건강보험료	822,020	0	0	0	822,020	0	822,020
고용보험료	231,366	0	0	0	231,366	0	231,366
보장성보험	1,000,000	0	1,000,000	0	2,000,000	0	2,000,000
장제인정용	0	0	0	0	0	0	0
의료비	2,021,055	0	0	0	2,021,055	0	2,021,055
교육비	1,094,520	0	0	0	1,094,520	0	1,094,520
대출기관	0	0	10,568,961	0	10,568,961	0	10,568,961
거주자	0	0	0	0	0	0	0
월세액	2,000,000	0	878,747	0	2,878,747	0	2,878,747
결정세액	0	0	0	0	0	0	0
중(전)근무지	10,000	0	10,000	0	20,000	0	20,000
중(전)근무지	150,000	0	15,000	0	165,000	0	165,000
중(전)근무지	200,000	0	20,000	0	220,000	0	220,000
주(현)근무지	135,060	0	13,480	0	148,540	0	148,540
차감징수세액	-585,060	0	-58,480	0	-643,540	0	-643,540

- ◆ 개인에 대한 연말정산 입력을 완료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화면으로 입력자료를 확인 후 맞을 경우 반드시 "저장 [S]" 을 클릭한 후 "검색완료[X]" 을 선택합니다.

(6) 외국인근로자 15% 선택 시 연말정산

구분	주(현)근무지	타지역근무	중(전)근무지(1)	중(전)근무지(2)	납세조합	중(전)	합계	항목별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근무처명	세대주구분 2	1.세대주 2.세대원	중전근무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 구분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중소기업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2.인사관리-> 2.인사대장검색 정정 오른쪽하단 취업청년(Y)부분과 감면기간을 입력하신후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여부와 기간을 입력 할 경우 기간내의 소득금액이 감면소득란에 표기되고,세액감면 부분의 조세특례(30조)에 표기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기간내의 급여/상여 계산시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되어 소득세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자번호	취업청년 N	취업청년대상(Y/N)	123-12-31234					
근무기간			2012.01.01	2012.03.31				
감면기간								
급여	26,000,000		3,000,000				29,000,000	
상여	400,000		1,000,000				1,400,000	
인정상여							0	
주식매수선택							0	
우리사주조합							0	
합계	26,400,000	0	4,000,000	0			30,400,000	
비과세/감면 명세서	[ENTER :입력] [입력모드 UP/DOWN KEY 다음항목 이동] 입력 명세출력 다음화면(N)							
구분	코드	주(현)근무지	타지역근무	중(전)근무지(1)	중(전)근무지(2)	납세조합	합계	
국외근로 100만원	MO1	0	0	0	0	0	0	
국외근로 200(300)만원	MO2	0	1,200,000	1,200,000	0	0	2,400,000	
국외근로	MO3	0	2,200,000		0	0	2,200,000	
▶마간근로수당	001	0	0	0	0	0	0	
출산·보육수당	001	0	0	0	0	0	0	
연구보조비(기업연구수)	H10	0	0	0	0	0	0	
연구보조비(연구기관등)	H09	0	0	0	0	0	0	
합계			3,400,000	1,200,000	0		4,600,000	
미기재비과세		중(전)미기재	급여외 과세소득	외국인세액	1. (15%)적용			
구분	주(현)근무지	타지역근무	중(전)근무지(1)	중(전)근무지(2)	납세조합	합계		
갑근세결정세	0	0	0	0	0	0	0	
지방세결정세	0	0	0	0	0	0	0	
농특세결정세	0	0	0	0	0	0	0	
국민연금납부	0	0	0	0	0	0	0	
건강보험납부	0	0	0	0	0	0	0	
고용보험납부	0	0	0	0	0	0	0	

- ◆ 외국인근로자 ①(15%) 적용하면 연간 근로소득(비과세포함)의 15%를 결정세액으로 적용합니다.
 Ex) (30,400,000(과세소득) + 4,600,000(기재비과세) + 0(미기재비과세)) X 0.15 (15%)=5,250,000

구분	주(현)근무지	중(전)근무지(1)	중(전)근무지(2)	납세조합	합계	출금여	사번
급여	26,000,000	3,000,000			29,000,000	0	1234
상여	400,000	1,000,000			1,400,000	0	성명
인정상여						0	외국인
주식매수선택						0	정산일
우리사주조합						0	2013.02.01
합계	26,400,000	4,000,000	0	0	30,400,000	-4,600,000	귀속년월
						0	2013.02
비과세소득합계						0	작업선택
비과세소득합계						0	12월말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0	중합검색 사용자수정 여부(U:수정)
연금저축 소득공제						0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0	
청약저축						0	
주택청약종합저축						0	
국가주택마련저축						0	
근로자주택마련저축						0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0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0	
우리사주조합출 소득공제						0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0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0	
합산소득과세표준						35,000,000	
산출세액						5,250,000	
세액감면						0	
근로소득						0	
납세조합공제						0	
주택차입금						0	
기부정치자금						0	
외국납부						0	
세액공제계						0	
결정세액						5,250,000	
지방소득세						525,000	
농어촌특별세						0	
합계						5,775,000	
기납부 세액						0	
중(전)근무지						0	
중(전)근무지						0	
주(현)근무지						0	
차감징수세액						5,250,000	
합계						525,000	

- ◆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15%를 적용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으로 결정세액은 연간 근로소득(비과세포함) 15%를 결정세액으로 적용합니다. 비과세는 "0"으로 표기 됩니다.

- ◆ 외국인공제금액의 '-4,600,000' 실제 결정세액에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력 시 총 급여 표시를 공제하기 위해 설정된 메뉴입니다. 2008년 부터는 합계(계)의 금액과 총 급여상의 금액이 다르게 출력됩니다.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감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9. 연말정산 입력자료가 없는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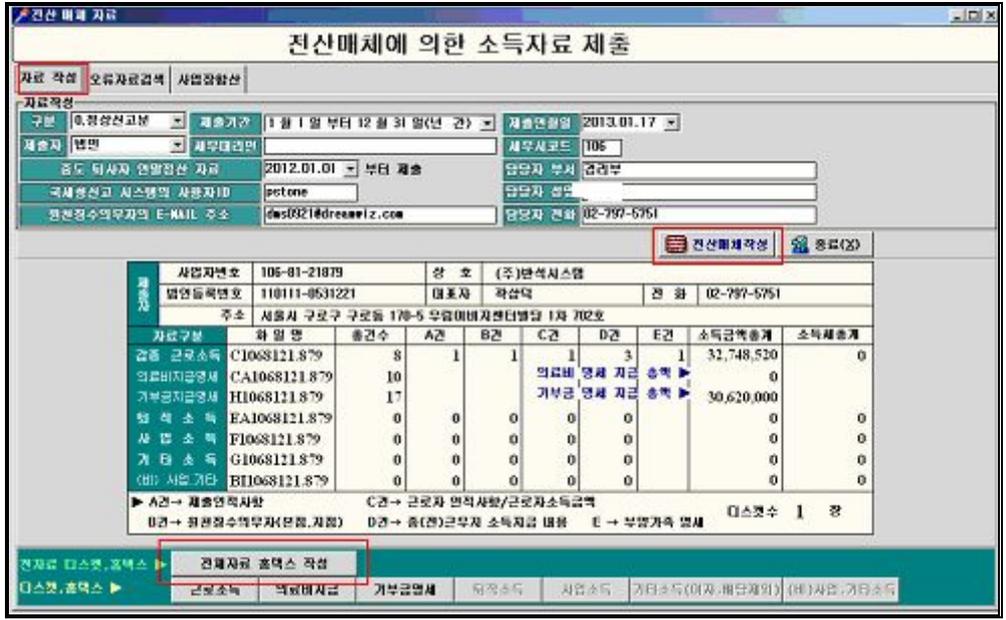
- ◆ 기본공제 이외에 입력할 사항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 입력자료가 없는 사원” 을 선택하여 일괄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10. 2012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공제 일자입력

- ◆ 연말정산 추가 징수 및 환급을 다음연도 2월 급여에 반영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자 선택(2013년도 2월), 급여(1), 상여(2) 구분을 지정 후 “공제일지장” 합니다.
다음연도 급여/상여 계산 후 검색을 하면 공제항목 중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 됩니다.

11. 전산매체 제출 방법

(1) 전산매체 작성



* **작업진행방법** 반석급여 **로그인** ▶▶▶ **4. 연말정산** ▶▶▶ **7. 12년도 전산매체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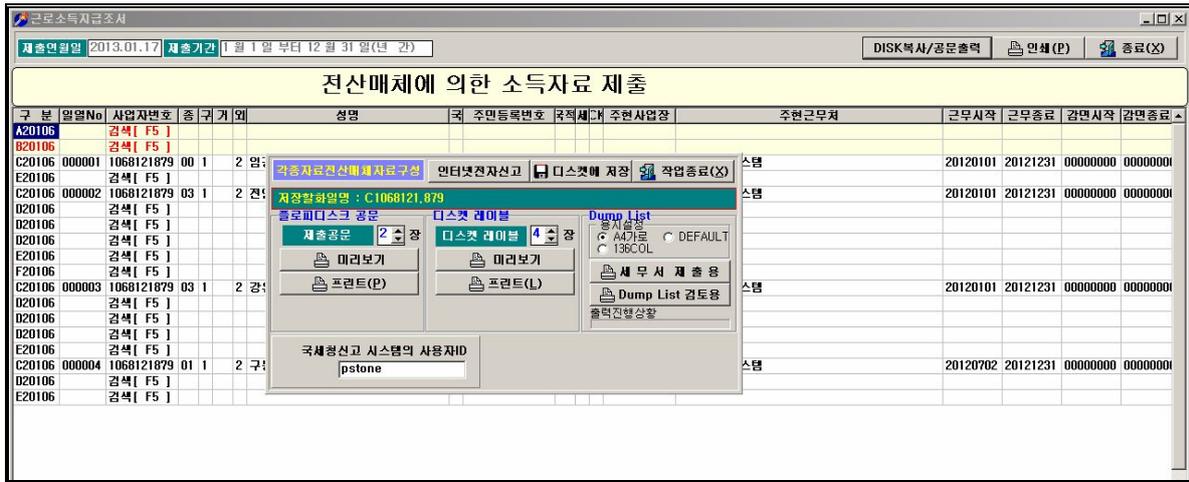
- ① 구 분: 0. 정상신고 분
- ② 제 출 자: 법인/개인/세무대리인
- ③ 제출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1월 1일부터 월 일 까지 (폐업 등)을 선택하여 **전산매체작성** 클릭
- ④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자료: 전산매체에 퇴직자를 포함하는지 여부
(포함할 경우: 2012년 1월 1일, / 포함하지 않을 경우: 2013년 1월 1일)
- ⑤ **전체자료 홈택스 작성** 클릭

(2) 전산매체 오류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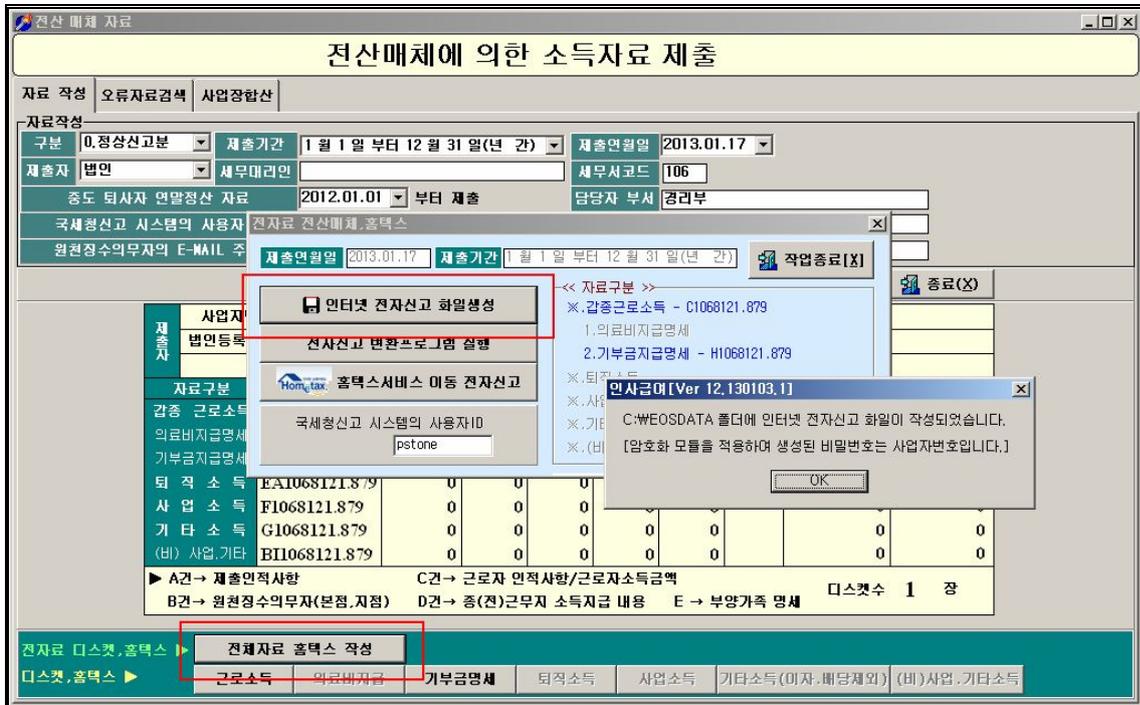
- ◆ 전산매체작성 후 상단에 오류자료검색을 하여 오류내용을 정정 후 다시 전산매체 작성 하도록 합니다.
- ◆ 오류자료는 국세청 전산실에서 요구하는 형태에 맞도록 검색된 자료이며 정정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오류자료 검색하여 오류 DATA가 있을 경우 전산매체 제출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전산매체 디스켓



- ◆ 전자신고가 아닌 전산매체로 신고하고자 할 경우 **DISK 복사/공문출력** 을 클릭하여 [인터넷전자신고], [디스켓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플로피디스크 공문 / 디스켓 레이블 / Dump List** 를 출력하여 내용을 확인 해 보신 후 [디스켓저장]을 통해 디스켓에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 ◆ 전자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터넷전자신고** 를 통해 파일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4) 전자신고 파일 생성 (인터넷 전자신고 파일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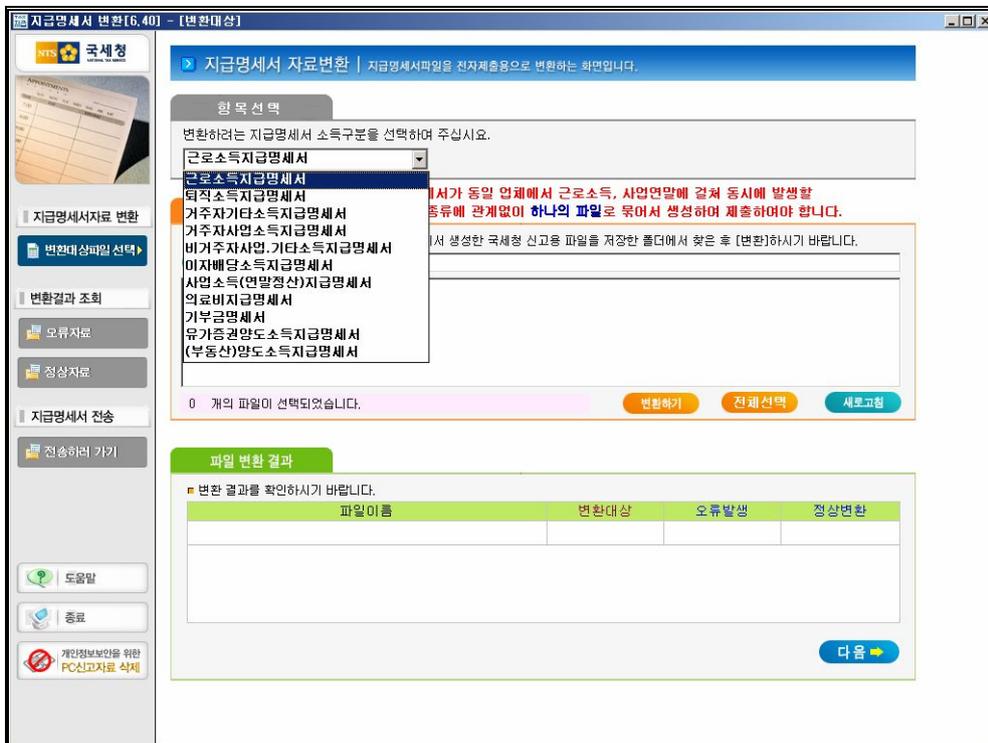
- ◆ 전산매체 작성하여 오류검증 완료된 경우 **전체자료 홈택스 작성** ▶▶▶ **인터넷 전자신고 파일생성** 해서 보여주는 화면으로 2012 년 중에 지급조서(홈택스 신고 전자파일) 파일을 일괄 생성됩니다.
- ◆ 근로소득/의료비/기부금/퇴직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비거주자사업기타 소득이 각기 다른 파일명으로 일괄작성이 된 화면입니다.

(5)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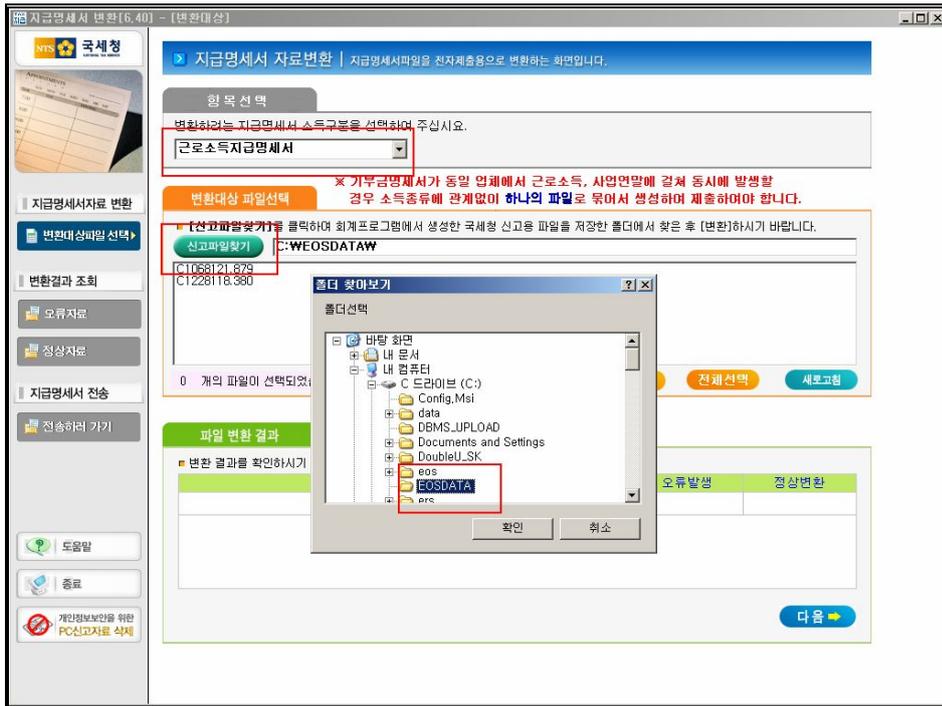
◆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실행 >>> 최신버전 확인 >>> 다음

(6-1) 지급명세서 변환 1 -소득구분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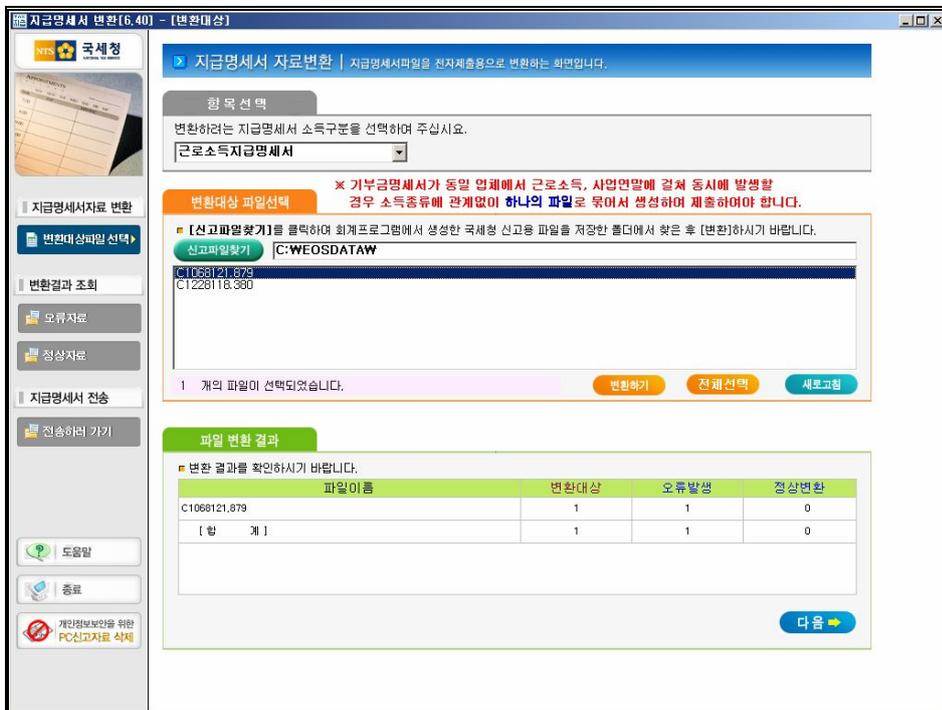
◆ 지급조서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으로 소득별로 다른 파일명으로 생성이 되기에 변환/전송도 소득별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6-2) 지급명세서 변환 2 - 파일선택



◆ 변환대상 **소득구분 선택** ▶▶▶ 신고파일 **찾기** ▶▶▶ **C:\WEOSDATA 폴더** 선택 확인

(6-3) 지급명세서 변환 3 - 변환실행



◆ 해당파일 ▶▶▶ **변환하기** ▶▶▶ **출력스 ID 입력** 확인

◆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선택한 후 변환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으로 하단에 오류발생에 건수가 보일 경우 오류내용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를 전송하실 수 없습니다.

(6-4) 지급명세서 변환 4 - 변환 시 오류확인



◆ **오류자료**를 선택했을 때 보여주는 화면으로 오류내용을 보시고 연말정산자료를 수정 후 **지급명세서 변환** 작업을 합니다.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을 하셔야 하며, 오류가 다 해결되었을 경우에는 왼쪽하단 **전송하러 가기**를 통해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

(<http://www.hometax.go.kr/eas/weoa2814.jsp>)

◆ 오류내용을 보시고 수정 후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반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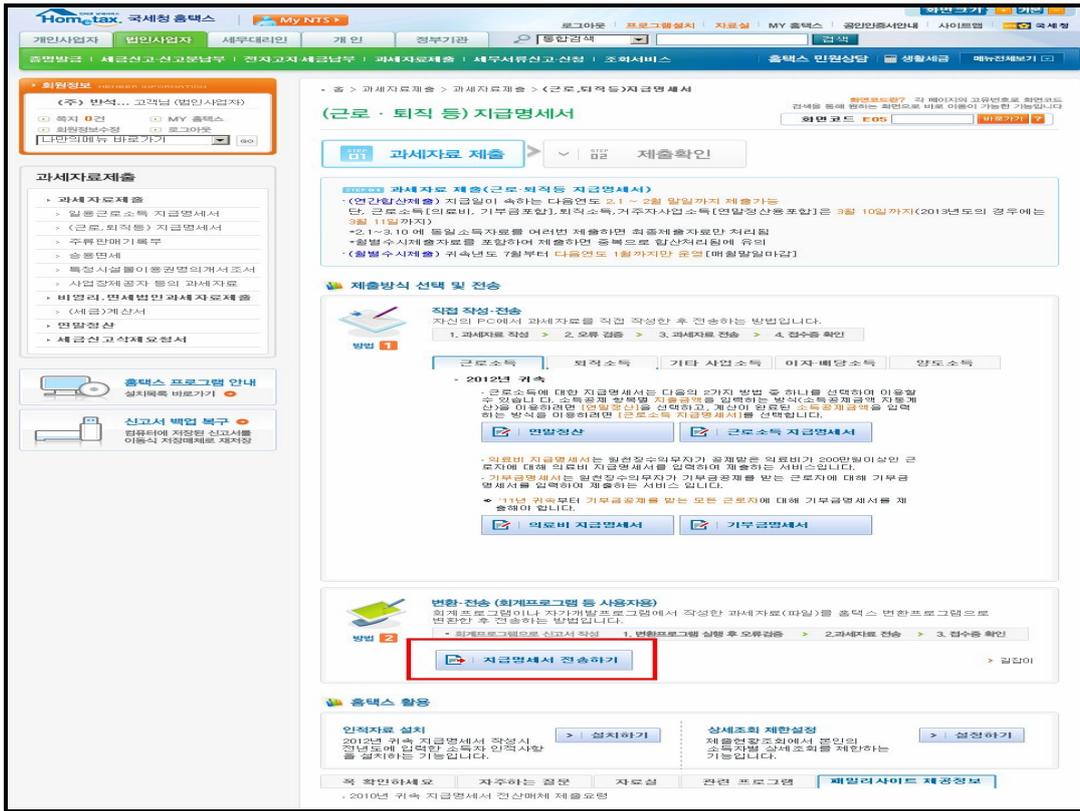
(7-1) 지급조서 전송하기 - 홈택스 로그인



◆ **지급명세서 변환 후** 변환프로그램에서 **전송하러 가기**를 했을 때 보여주는 홈택스 사이트 입니다.

변환할 때 소득 별로 변환했던 것처럼 전송할 경우에는 소득 별로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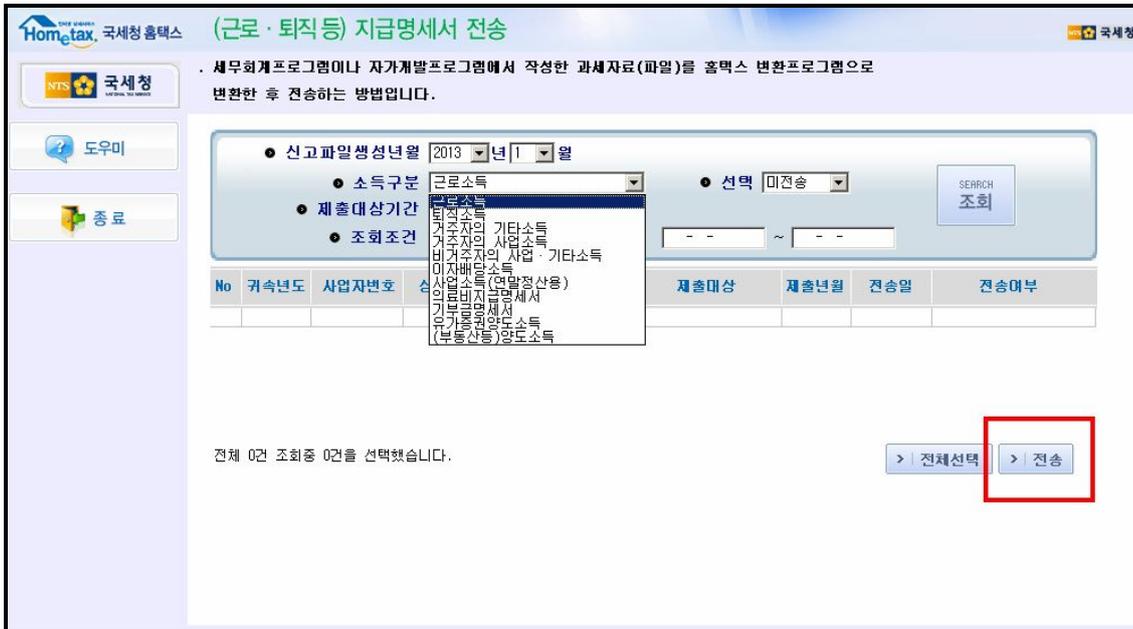
(7-2) 지급조서 전송하기 - 홈택스 지급명세서 전송하기



◆ 홈택스 로그인후 나오는 메뉴로 반석프로그램으로 전산매체 작성하신 경우

방법 2. 지급명세서전송(회계프로그램 등 사용자용)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전송하기** 클릭

(7-3) 지급조서 전송하기 - 홈택스 지급명세서 전송하기



◆ 지급명세서전송 화면으로 지급명세서 변환 시 소득구분을 선택하여 변환 것처럼 전송할 소득구분 파일을 선택하신 후 **전송**을 클릭합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메뉴를 검색 후 해당 변환파일을 선택 전송합니다.)

12. 홈택스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국세청(홈택스) 신고기한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매월 납부사업자기준.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반기 납부사업자기준.	
신고항목	제출기한	신고항목	제출기한
거주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이자,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단, 반석급여에서 지원 안됨)	2013년 2월 28일까지	좌동	좌동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봉사료제외)	2013년 3월 11일까지	좌동	좌동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2012년 2월 귀속 급여, 상여)	2013년 3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2013년 2월 귀속)	2013년 7월 10일까지 (단, 환급신청시 3월 11일까지)

▶ 2012년 귀속 연말정산 완료 후 환급, 징수세액은 다음 년도 (2013년) 2월 급여 또는 상여에 반영 후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를 3월 11일까지 홈택스 신고합니다.

-> 2013년도 2월 급여 또는 상여(귀속)를 2월 1일~28일 지급으로 적용합니다. (2월 귀속, 2월 지급)

-> 업체에 따라 2월 급여(귀속)를 3월에 지급하는 경우더라도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2월 급여는 위에 사항에 따라 적용하도록 합니다. (2013년 2월 귀속 / 2013년 2월 지급)

-> 2012년 연말정산 분 반영하여 2013년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실 경우에 2월 귀속/2월 지급을 선택 후 상단 연말정산을 Click 하시면 연말정산 분이 반영된 이행상황신고서가 작성됩니다.

▶ 2012년 귀속 지급명세서와 이행상황신고서는 별개의 신고로 이루어집니다.

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하셨다고 해서 지급명세서 신고가 완료된 것이 아니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